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

개정 2023.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라 한다) 학칙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애학생” 이라 함은 본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 중 ‘장애인 복지법’ 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본 대학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시설·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3. 9. 1)
7.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개정: 2023. 9. 1.)

제5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대학 입학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입학학생처장이 겸직하고, 센터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지원위원회)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위원회(Committee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9. 1.)

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아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9. 1.)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관련 교직원
2.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 9. 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사항
3. 장애학생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 관련 심의·결정 필요 사항

제9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업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조치를 서면으로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지원위원회는 심사·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